

E-Verify에 참여하는 단체



고용주는 고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보장청(SSA)과, 필요한 경우, 미국 국토안전부(DHS)에 모든 신규 피고용자의 서식 I-9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.

중요사항: 귀하가 일을 하도록 승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, 고용주는 귀하를 고용해직 등과 같은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에게 서면 통보서를 주고 DHS 및/또는 SSA에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고용주는 일자리 지원자를 사전 선별하기 위해 E-Verify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귀하가 서식 I-9에 첨부하는 서류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.

서식 I-9의 첨부서류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, 고용주는 E-Verify의 사진매칭도구를 사용하여 영주카드, 고용허가카드, 미국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미국정부가 보유한 공식사진을 비교합니다. 또한 E-Verify는 운전면허증과 일부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데이터와도 비교합니다.

귀하의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적이나 시민권 유무 때문에 고용적격성 검증과정 동안에 차별을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특별상담소(Office of Special Counsel)의 800-255-7688, 800-237-2515 (TDD)나 www.justice.gov/crt/osc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사람들을 위한 E-Verify

E-Verify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DHS로 연락해 주십시오.

전화: 888-897-7781

웹사이트: www.dhs.gov/E-Verify

고지사항:

미국 연방법에서는 미국에서 고용되는 모든 사람의 신분과 고용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E-VERIFY IS A SERVICE OF DHS AND SSA

E-Verify 로고와 표식은 미국 국토안전부의 등록상표입니다. 본 포스터의 상업적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